제1783호

2020. 10. 22.(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미 디 어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0-172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 제2020-173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

고 시

· 제2020-188호 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2
· 제2020-189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41
· 제2020-190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 43
·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62

공 고

· 제2020-1702호 공인 등록 공고 ……………………………………………………………………………………… 6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93-2020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72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안.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조)

다. 별도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개정(안 제2조)

라. 상위법 신설 및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 위임사항은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어 해당 내용 삭제

바. 아동학대 조사체계의 공공 중심 개편에 따른 구의 역할 확대 및 조문체계 정비

사. 조문체계화 및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 명칭의 통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리 등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전화: 2670-1618, 이메일: kde78@ydp.go.kr,

팩스: 2670-1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조례의 개정입법안은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를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란 「아동복지법」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아동 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 등" 이라 한다)에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 중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를 "아동학대예방 등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2)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로, "교육을"을 "교육 및 홍보를"로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의4를 제8조의2로 한다.

제10조, 제11조 ,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 제11조 , 제12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아동학대 예방"을 "아동학대예방"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중 "아동학대 예방"을 "아동학대예방"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중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를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아동보호를 위하여--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삭 제>

4.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아동 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등" 이라 한다)에 노력---------.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아동학대예방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삭 제>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예산지원) ------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제7조(예산지원) ------ 아동학대예방등에 -------------------------.
제9조의2(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 교육 및 홍보를 -------------------.
제9조의3(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의4 (생 략)	제8조의2(현행 제9조의4와 같음)
제10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 --------------------------------- ---------------------------------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 아동학대예방 ---------------------------------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73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전면개정(훈령 제130호, 2020. 5. 1.시행)에 따라 표준안을 참고하여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규칙을 개정하도록 행안부에서 권고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6(2020.02.03.)]

나. 지방회계업무 규정인 행정안전부 훈령과 자치단체의 규칙이 표준안 형태로 대부분 동일하고 예산·결산·계약 등 개별 행정규칙에 유사·중복 규정이 있어, 공통 규정을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 존치하고, 자치단체 규칙에서는 삭제하여 회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규칙 제명 변경

○ (개정 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 (개정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공통 규정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존치하고 타 행안부 훈령·예규 등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여, 표준안을 참고하여 재편

○ (개정 전) 181개 조문 → (개정 후) 27개 조문

※ 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및 계약·재정보증사항 등 필요조항 유지

다.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액 상향 조정(제6조, [별표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02-2670-3207, 팩스: 02-2670-3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가 적용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입찰
2.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 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규칙 제4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① 금고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과장
2. 세출: 재무과장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을 대신하여 계산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이하 “주관 과장”이라 한다)은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계약의 경우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찰계약 : 34일
2. 원가계산이 필요한 계약 : 44일

제12조(계약방법 등의 명시) 주관 과장은 제11조의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의 제40호 서식 내지 제41-1호 서식을 사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별표 6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8의 제37호 서식을 사용한다.
③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체결한다.

제14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계약이행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구매요구) 구매요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로 저장품과 단가계약물품을 구매 요구할 때에는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에 따라 물품매입품의요구서에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제16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과"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격을 산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주관 과장이 확인한다.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기준)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에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 공해, 불의의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
2.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시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④ 노임단가·자재단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시설공사 시행)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문에 설계도서,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서 등(이하 "공문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적용조문)
6. 예산과목
② 재무관은 공문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관과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검사자 등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물품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에 따라 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2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법 제50조에 따른 영등포구(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포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
2.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명령 등의 업무

제22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청장 - 피보험자
2. 회계관계공무원 - 피보증인
3. 보험회사 - 보증인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23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24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까지 「보험업

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5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료의 지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제2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때
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며 이를 위해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의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동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 임 징 수 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과장	-	-	-	-
통 합 지 출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	보건소

[별표 3]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합의자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건당 3억원 이상	국장
	건당 3억원 미만	과장
	건당 5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용역 또는 제조	건당 1억원 이상	국장
	건당 1억원 미만	과장
	건당 2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물품 매입 및 기타	건당 5천만원 이상	국장
	건당 5천만원 미만	과장
	건당 1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 합의권자가 과장, 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주사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주사의 합의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담당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관련 담당주사 모두의 합의를 받은 다음 과장,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주사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주사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주사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업무 담당 국·과장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별표 5]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내용별 검사(검수)

○ 물 품

내용 / 기관별	금 액	검 사 (검 수)	비 고
본 청	1,000만원 미만	○ 주관과 주관담당자 2명	
	1,000만원 이상	○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담당자 1명	
구의회, 보건소	1,000만원 미만	○ 주관부서 직원 2명	
	1,000만원 이상	○ 주관부서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 ○ 주관부서 직원 1명	

○ 공사, 용역

내용 / 기관별	금 액	검 사 (검 수)	비 고
본 청	5,000만원 미만	○ 주관과 주관 담당자 2명	
	5,000만원 이상	○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1명 ○ 주관담당자 1명	
구의회, 보건소	5,000만원 미만	○ 주관부서 직원 2명	
	5,000만원 이상	○ 주관부서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 ○ 주관부서 직원 1명	

※ 검사자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에 차 하급자가 검사자로 됨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연월일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⑧ 검사(수)연월일	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 납 원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쪽)

(뒷 쪽)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 규격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합니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10만원이상의 1년이상 사용하는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별표5)에 의거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수인 6급 1인을 포함시킵니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부분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약금액	금 원 (금 원)	준공금액	금 원 (금 원)
계약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고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약건명
  나. 계약업체
  다. 계약금액
  라. 계약연월일
  마. 준공기한

2. 위 공사(용역, 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다. 지연배상금 부과여부(부과, 미부과)
  라. 연기사유

첨부 : 연기사유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과) (발주 주관과 작성)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조달 가격	물가 정보	A업체	B업체	최저단가	금액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영등포구재무관 귀하

※ 작성요령

- 산출조사근거란에는 품목별 단가만 기재
- 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산출가격단가로 확정
- 확정된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산출가격 금액란에 기재
- 부가가치세 포함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88호

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99호(1963.4.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76호(1996.6.10.)로 공원조성계획(최종) 결정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53-1 중앙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 ○ 서울시고시 제1976호(1996.6.10.)로 공원조성계획(최종) 결정된 사항의 오류정정과 현황에 맞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53-1번지 일대
다. 면 적 : 3,671.8㎡
라.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마.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02-2670-3757)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3)

구 분		변경 전 부지면적 (㎡)	변경 전 시설면적 (㎡)	변경 전 건축물 동수(동)	변경 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 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 전 공작물 (기)	변경 후 부지면적 (㎡)	변경 후 시설면적 (㎡)	변경 후 건축물 동수(동)	변경 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 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 후 공작물 (기)	비 고
계		3,671.8	2,029.9	1	80	80	55	3,671.8	1,851.94	1동	170.97	170.97	61	시설면적 감 177.96㎡, 감9기 오류정정(55기→ 70기)
기반시설	소 계	771.99	771.99					819.97	819.97					증 47.98㎡
	도 로	157.3	157.3					698.74	698.74					증 541.44㎡,
	광 장	614.69	614.69					121.23	121.23					부호변경, 감 493.46㎡
조 경 시 설		153.0	153.0				5							감 153.0㎡, 감 5기
휴 양 시 설							26	164.1	164.1				14	증 164.1㎡, 감 12기
유 희 시 설		474.31	474.31				2	332.0	332.0				5	증 68.67㎡, 증3기 오류정정(474.31㎡ → 263.33㎡)
운 동 시 설		754.05	754.05				7	304.2	304.2				8	감 449.85㎡, 증1기
교 양 시 설		80	80	1동	80	80		170.97	170.97	1동	170.97	170.97		면적오류정정 (80㎡ → 170.97㎡)
편 익 시 설													1	증1기
관 리 시 설		7.53	7.53				15	60.7	60.7				33	증 53.17㎡, 증3기 오류정정(15기→ 30기)
녹지및기타		1,641.9						1,819.86						증)177.96㎡
공 원 시 설 율		(2,029.9㎡ ÷ 3,671.8㎡) × 100% = 55.28%						(1,851.94㎡ ÷ 3,671.8㎡) × 100% = 50.43%						감 4.85%
공 원 건 폐 율		(80㎡ ÷ 3,671.8㎡) × 100% = 2.17%						(170.97㎡ ÷ 3,671.8㎡) × 100% = 4.65%						변동없음 면적오류정정 (80㎡ → 170.97㎡)

나.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부호	변경 전 위치	변경 전 부지면적(㎡)	변경 전 시설면적(㎡)	변경 전 구조	변경 전 규모	변경 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 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 전 공작물(기)	변경 후 부호	변경 후 위치	변경 후 부지면적(㎡)	변경 후 시설면적(㎡)	변경 후 구조	변경 후 규모	변경 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 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 후 공작물(기)	비 고
계				3,671.8	2,029.9			80.0	80.0	55			3,671.8	1,851.94	시멘트 벽돌조	1동	170.97	170.97	61	시설면적 감177.96㎡, 감9기, 오류정정(55기→ 70기)
기반시설	소 계			771.99	771.99								819.97	819.97						증 47.98㎡,
기반시설	도 로	가		157.3	157.3							영등포동6가 65-1,53-1	698.74	698.74						증 541.44㎡,
기반시설	광 장	나		614.69	614.69						가	영등포동6가 65-1,53-1	121.23	121.23						부호변경 감 493.46㎡
조경시설	소 계			153.0	153.0					5										감 153.0㎡, 감 5기
조경시설	파고라	①		16	16					1										폐지
조경시설	쉘터	②		48	48					3										폐지
조경시설	원형파고라	③		89	89					1										폐지
휴양시설	소 계									26			164.1	164.1					14	증 164.1㎡, 감 12기
휴양시설	휴게소										나	영등포동6가 65-1	164.1	164.1						신설, 증 164.1㎡
휴양시설	등의자	④								10	②	영등포동6가 65-1,53-1							2	부호변경,감 8기
휴양시설	평의자	⑤								16	③	영등포동6가 65-1,53-1							9	부호변경,감 7기
휴양시설	원형의자										④	영등포동6가 65-1							2	증 2기
휴양시설	연식의자										⑤	영등포동6가 53-1							1	증 1기
유희시설	소 계			263.33	263.33					2			332.0	332.0					5	증 68.67㎡, 증3기
유희시설	놀이터	다									다	영등포동6가 65-1,53-1	332.0	332.0						증 332.0㎡

구 분		변경 전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변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 고
	조합놀이대	다		263.33	263.33					1	⑥	영등포동6가 53-1							1	부호변경 감 263.33㎡
	시소	⑥								1										폐지, 감1기
	그네										⑦	영등포동6가 53-1							1	신설 1기
	개구리유아놀이대										⑧	영등포동6가 53-1							1	신설 1기
	발판오르기										⑨	영등포동6가 53-1							1	신설 1기
	외나무다리건너기										⑩	영등포동6가 65-1							1	신설 1기
운동시설	소 계			754.05	754.05					7			304.2	304.2					8	감 449.85㎡, 증1기
	운동장	라		754.05	754.05					7		영등포동6가 65-1,53-1								폐지, 감 754.05㎡
	배드민턴장										라	영등포동6가 65-1,53-1	184.0	184.0		1면				신설, 증 184㎡
	체력단련장										마	영등포동6가 65-1,53-1	120.2	120.2					6	신설, 증 120.2㎡
	체력단련기구										⑪	영등포동6가 65-1,53-1							(6)	신설 6기
	농구대	⑦								(1)										폐지, 감 1기
	철봉	⑧								(1)	⑫								1	부호변경
	사다리오르내리기	⑨								(1)										폐지, 감 1기
	평행봉	⑩								(1)	⑬	영등포동6가 65-1							1	부호변경
	매달려건너기	⑪								(1)										폐지, 감 1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하체들어올리기	⑫								(1)										폐지, 감 1기
	오금펴기	⑬								(1)										폐지, 감 1기
교양시설	소 계			80	80	시멘트벽돌조	1동	80	80				170.97	170.97	시멘트벽돌조	1동	170.97	170.97		변동없음, 면적오류정정, (80㎡ → 170.97㎡)
	어린이집	1		80	80	시멘트벽돌조	1동	80	80			영등포동6가 65-1,53-1	170.97	170.97	시멘트벽돌조	1동	170.97	170.97		면적오류정정
편익시설	소계																		1	증1기
	화장실										⑭				이동식				1	신설 1기, 14.56㎡
관리시설	소 계			7.53	7.53					15			60.7	60.7					33	증 53.17㎡, 증3기 오류정정(15기→ 30기)
	관리소										⑮	영등포동6가 53-1			이동식				1	신설 1기, 20.66㎡
	자율방범초소										⑯	영등포동6가 65-1			이동식				1	신설 1기, 6.12㎡
	창고										⑰	영등포동6가 65-1,53-1			이동식				1	신설 1기, 2.94㎡
	볼라드	⑭								9	⑱	영등포동6가 65-1,53-1							7	부호변경, 감 2기
	휀스			732	7.32															폐지, 감 7.32㎡
	휴지통	⑮								5										폐지, 감 5기
	종합안내판	⑯		0.21	0.21					1										폐지, 감 0.21㎡,감11기
	안내판										⑲	영등포동6가 65-1,53-1							6	신설, 6기
	표지석										⑳	영등포동6가							1	신설, 1기

구 분		변경 전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변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 고
												65-1								
	공원등	⑰								15	㉑	영등포동6가 65-1,53-1							16	증 1기
	가벽										㉒	영등포동6가 65-1,53-1	60.7	60.7						증)60.7㎡
녹지 및 기타	소 계			1,641.9									1.819.86							증)177.96㎡
	녹 지 및 기타			1,641.9									1.819.86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합계			98.8	157.3				감157.3㎡
변경	산책로				232.5	698.74				증698.74㎡
당초	소로	소계			98.8	157.3				폐지
당초		3	1	1.5	15	22.5	소로	광장	운동장	폐지
당초		3	2	2.0	15	30	소로	부출입구	광장	폐지
당초		3	3	2.0	21	42	소로	부출입구	광장	폐지
당초		3	4	2.0	15	30	소로	광장	어린이집	폐지
당초		3	5	1.0	22	22	소로	광장	어린이집	폐지
당초		3	6	1.0	10.8	10.8	소로	도로	부출입구	폐지
신설	산책로	소계			232.5	698.74				신설
신설		-	1	4.5	4.0	18.0	산책로	동측진입로	산책로2	신설
신설		-	2	3.1	58.0	179.8	산책로	산책로1	북측진입로	신설
신설		-	3	3.78	10.0	37.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2	신설
신설		-	4	2.3	30.3	69.69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3	신설
신설		-	5	4.8	31.5	151.2	산책로	서측진입로	산책로4	신설
신설		-	6	2.3	55.6	127.88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2	신설
신설		-	7	3.3	3.3	10.89	산책로	남측진입로	산책로6	신설
신설		-	8	3.1	12.8	39.68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2	신설
신설		-	9	4.3	7.5	32.25	산책로	휴게광장	산책로8	신설
신설		-	10	1.7	17.5	29.75	산책로	관리소	산책로4	신설
신설			11	0.9	2	1.8	산책로	산책로2	자율방범초소	신설

조성계획도(변경전)

중앙어린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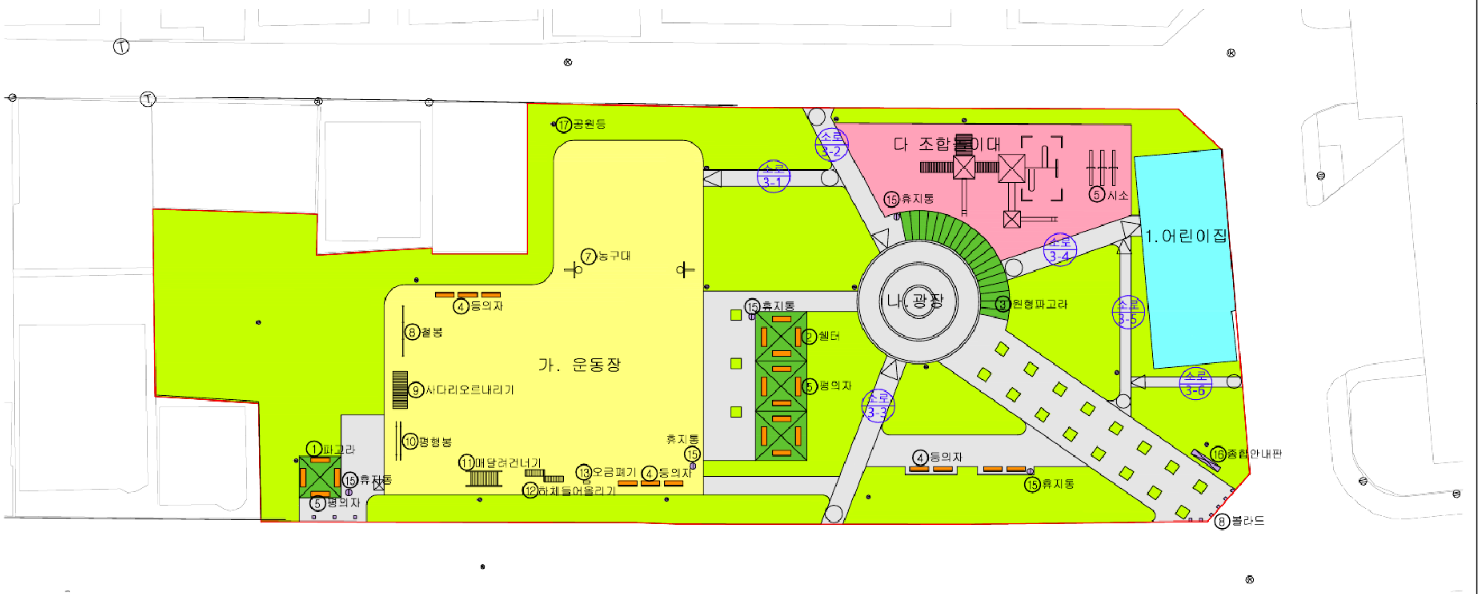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 (기)	비 고
합 계			3,671.8	2,029.9	55	
기반시설	소 계		771.99	771.99		
	도 로	가	157.3	157.3		
	광 장	나	614.69	614.69		
조경시설	소 계		153.0	153.0	5	
	파 고 라	①	16.0	16.0	1	
	쉘 터	②	48.0	48.0	3	
	원형파고라	③	89.0	89.0	1	
휴양시설	소 계				26	
	등 의 자	④			10	
	평 의 자	⑤			16	
유희시설	소 계		263.33	263.33	2	
	조합놀이대	다	263.33	263.33	1	
	시 소	⑥			1	
운동시설	소 계		754.05	754.05	7	
	운 동 장	라	754.05	754.05	7	
	농 구 대	⑦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 (기)	비 고
운동시설	철 봉	⑧			(1)	
	사다리오르내리기	⑨			(1)	
	평행봉	⑩	(270.8)	(270.8)	(1)	
	매달려건너기	⑪	(18.5)	(18.5)	(1)	
	하체들어올리기	⑫			(1)	
	오금펴기	⑬			(1)	
교양시설	소 계		80	80		
	어린이집	3	80	80		
관리시설	소 계		7.53	7.53	15	
	볼 라 드	⑭			9	
	휀 스	⑮	7.32	7.32		
	휴 지 통				5	
	종합안내판	⑯	0.21	0.21	1	
	공 원 등	⑰			15	
녹지및기타	소 계		1,641.9			
	녹 지		1,641.9			

조성계획도(변경후)

중앙어린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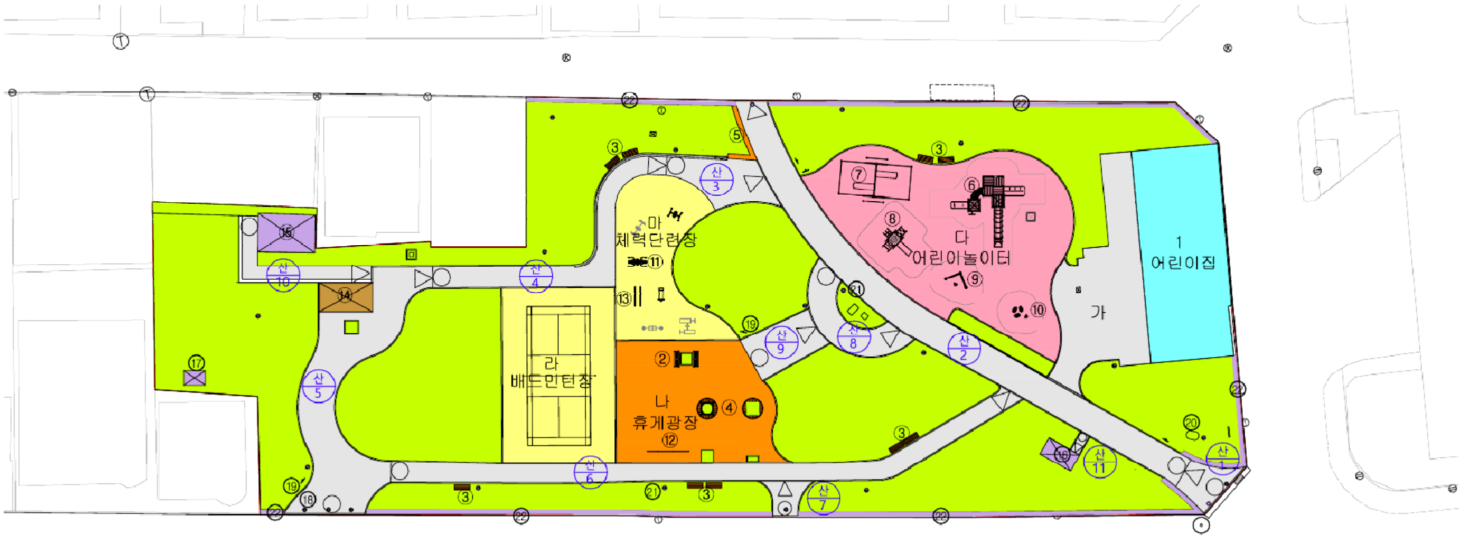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3,671.8	1,851.94	61	시설면적 감177.96㎡ 감 9기
기반시설	소 계		819.97	819.97		시설면적 증47.98㎡
	도 로		698.74	698.74		시설면적 증541.44㎡
	광 장	가	121.23	121.23		부호변경 시설면적 감493.46㎡
휴양시설	소 계		164.1	164.1	14	시설면적 증164.1㎡ 감 12기
	휴 게 소	나	164.1	164.1		신설, 164.1㎡
	등 의 자	②			2	부호변경, 감6기
	평 의 자	③			9	부호변경, 감7기
	원형의자	④			2	신설 2기
	연식의자	⑤			1	신설 1기
유희시설	소 계		332.0	332.0	5	시설면적 증68.67㎡ 증 3기
	놀 이 터	다	332.0	332.0		시설면적 증332.0㎡
	조합놀이대	⑥			1	시설면적 감283.33㎡
	그 네	⑦			1	신설 1기
	개구리유아놀이대	⑧			1	신설 1기
	발판오르기	⑨			1	신설 1기
	외나무다리건너기	⑩			1	신설 1기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304.2	304.2	8	시설면적 감440.85㎡ 증 1기
	배드민턴장	라	184.0	184.0		시설면적 증184.0㎡ 신설 1기
	체력단련장	마	120.2	120.2		시설면적 증120.2㎡
	체력단련기구	⑪			6	신설 6기
	철 봉	⑫			1	부호변경
	평 행 봉	⑬			1	부호변경
교양시설	소 계		170.97	170.97		[illegible]
	어린이집	1	170.97	170.97		면적오류정정 (60㎡→170.97㎡)
편익시설	소 계				1	신설 1기
	화 장 실	⑭			1	신설 1기(14.56㎡)
관리시설	소 계		60.7	60.7	33	시설면적 증53.17㎡ 증 3기
	관리소	⑮			1	신설 1기
	자율방범초소	⑯			1	신설 1기
	창고	⑰			1	신설 1기
	볼라드	⑱			7	감 2기
	안내판	⑲			6	신설 6기
	표지석	⑳			1	신설 1기
	공원등	㉑			16	증 1기
	가 벽	㉒	60.7	60.7		시설면적 증60.7㎡
녹지및기타	소 계		1,819.86			증 177.96㎡
	녹지 및 기타		1,819.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89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3 (영등포동4가) 외 11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3길 9-1 (영등포동)	2020-10-22	신규부여	2010-05-27	영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3 (영등포동4가)	2020-10-22	신규부여	2010-05-27	영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19 (영등포동1가)	2020-10-22	신규부여	2010-05-27	경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7-2, 7-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37 (신길동)	2020-10-22	신규부여	2010-05-27	여의대방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7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가길 6-1 (양평동5가)	2020-10-22	신규부여	2010-05-27	양평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6길 9 (영등포동7가)	2020-10-19	2020-10-22	대장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길 8 (도림동)	2020-10-19	2020-10-22	대장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15-8 (문래동3가)	2020-10-19	2020-10-22	대장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15-6 (문래동3가)	2020-10-19	2020-10-22	대장말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1길 6-5 (양평동3가)	2020-10-19	2020-10-22	대장말소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5길 7 (양평동3가)	2020-10-19	2020-10-22	대장말소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1길 6-7 (양평동3가)	2020-10-19	2020-10-22	대장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90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12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24-5 (신길동)외 130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 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장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하였습니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조서(3차)

연번	도로명주소	지하여부	층명칭	호명칭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48길24-5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3-6 (신길동)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3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5 (신길동)	지상		201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301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5-1 (신길동)	지상	1	202
		지하		101
		지하		102
		지상	2	301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23-6 (신길동)	지상	1	201
		지하		102
		지상	1	202
		지상	2	301
		지상	3	401
		지하		101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23-4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01
		지상		101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25 (신길동)	지하		1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5-10 (신길동)	지상		104
		지상		201
		지상		103
		지상		102
		지상		202
		지상		301
		지상		101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9-2 (신길동)	지상		201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101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6-11 (신길동)	지하		103
		지상		102
		지상		201
		지상		301

		지하		101
		지하		102
		지상		101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3-26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3-24 (신길동)	지하		101
		지상		101
		지상		201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6-15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2	301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4
		지상	1	202
		지상	1	204
		지상	1	203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20-1 (신길동)	지상	1	202
		지하		104
		지하		103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	401
		지상	2	301
		지상	1	201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5-12 (신길동)	지하	1	101
		지상	3	401
		지상	2	301
		지상	1	202
		지상	1	201
		지하	1	102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7-1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24-8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지상		301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24-10 (신길동)	지하		101
		지상		101
		지하		102
		지상		201
		지상		301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24-9 (신길동)	지하		101
		지하		102
		지상	2	301
		지상	1	202
		지상	1	201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0-14 (신길동)	지상		B02
		지상		B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84-8 (신길동)	지하		102
		지상		102
		지상		103
		지상		201
		지상		202
		지하		103
		지상		101
		지하		101
		지상		301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11 (신길동)	지상		202
		지상		201
		지상		101
		지상		102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1-11 (신길동)	지하		104
		지하		105
		지하		103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1	202
		지상	1	201
		지상	2	301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12-1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지상		102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9-2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103
		지상		105
		지상		203
		지상		107
		지상		108
		지상		201
		지상		202
		지상		106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4-3 (신길동)	지상		102
		지상		201
		지상		301

		지하		101
		지하		102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0-4 (신길동)	지하		103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	402
		지상	3	401
		지상	2	301
		지상	1	201
		지상	1	202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0-6 (신길동)	지하		101
		지상	3	402
		지상	3	401
		지상	2	301
		지상	1	202
		지상	1	201
		지하		102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5길 20 (신길동)	지상		318
		지상		319
		지상		401
		지상		402
		지상		403
		지상		404
		지상		405
		지상		406
		지상		407
		지상		408
		지상		501
		지상		502
		지상		503
		지상		504
		지상		505
		지상		506
		지상		507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103
		지상		104
		지상		105
		지상		106
		지상		107
		지상		201
		지상		202
		지상		203
		지상		204
		지상		205
		지상		206
		지상		207
		지상		208

		지상		209
		지상		210
		지상		211
		지상		212
		지상		213
		지상		214
		지상		215
		지상		216
		지상		217
		지상		218
		지상		219
		지상		301
		지상		302
		지상		303
		지상		304
		지상		305
		지상		306
		지상		307
		지상		308
		지상		309
		지상		310
		지상		311
		지상		312
		지상		313
		지상		314
		지상		315
		지상		316
		지상		317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17-4 (신길동)	지상	1	202
		지상	1	201
		지하		103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	401
		지상	1	203
		지상	2	301
		지상	2	302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17-3 (신길동)	지상		201
		지상		301
		지하		101
		지상		101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14 (신길동)	지상		302
		지상		301
		지상		201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401
		지상		501
		지상		402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나길 40-3 (신길동)	지상	3	401
		지하		101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상	2	301
		지하		102
		지하		103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34-5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17-5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상	2	301
		지상	3	401
		지하		101
		지하		102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37-2 (신길동)	지상		101
		지하		101
		지상		201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39-1 (신길동)	지상		301
		지상		401
		지하		101
		지상		101
		지상		201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39-5 (신길동)	지상		201
		지하		101
		지상		101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41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01
		지상		101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28-1 (신길동)	지상		3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28-3 (신길동)	지상		101
		지하		101
		지상		201
		지하		102
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0-7 (신길동)	지상		301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4
		지하		105
		지상		201
		지상		101
		지상		102
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0-8 (신길동)	지상		B02
		지상		B03

		지상		B01
		지상		3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0-5 (신길동)	지상		101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01
		지상		102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9-8 (신길동)	지상		B02
		지상		B01
		지상		401
		지상		301
		지상		202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9-5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2	301
		지상	3	401
		지상	1	202
		지하		102
		지하		101
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9 (신길동)	지상		201
		지상		202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상		101
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7 (신길동)	지상		B01
		지상		301
		지상		101
		지상		201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5-10 (신길동)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지상		101
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3-9 (신길동)	지하		101
		지하		102
		지상	1	201
		지상	2	301
		지상	1	202
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1-12 (신길동)	지하		101
		지상		301
		지상		202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1-16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1
		지상		401
		지상		302
		지상		301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103
		지상		201
		지상		202
		지상		203
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2-5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2-1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01
		지상		201
		지상		101
		지상		102
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2-3 (신길동)	지하		1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지하		102
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1-2 (신길동)	지상		302
		지상		401
		지상		402
		지상		101
		지상		201
		지상		202
		지상		301
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1-4 (신길동)	지하		102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5-7 (신길동)	지하		103
		지상	1	201
		지하		101
		지상	2	301
		지상	1	202
		지하		102
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6-4 (신길동)	지하		101
		지상		301
		지상		201

		지상		101
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3-28 (신길동)	지상		B01
		지상		B02
		지상		301
		지상		201
		지상		101
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3-34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상		301
		지하		101
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3-29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01
		지상		101
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13-32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	401
		지상	2	302
		지상	2	301
		지상	1	202
		지상	1	201
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84-4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2	301
		지상	2	302
		지상	2	303
		지상	3	401
		지상	2	305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1
		지상	2	304
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84-1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상	2	301
		지상	3	401
		지하		101
		지하		102
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4-3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하		102
		지상	2	302
		지하		101
		지상	2	301
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90-8 (신길동)	지상		201
		지상		101
		지하		101
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90-11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01
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6-2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1-6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8-6 (신길동)	지상		201
		지하		101
		지상		101
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86-9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2
		지상		301
		지상		201
		지하		102
		지하		101
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86-8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86-7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2	301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	401
		지상	2	302
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86-4 (신길동)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지상		B2
		지상		B1
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86-5 (신길동)	지하		101
		지상	2	301
		지상	1	202
		지상	1	201
		지하		102
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90-13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0-17 (신길동)	지상	3	401
		지상	1	2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1
		지상	1	202
		지상	2	301
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2 (신길동)	지상		102
		지상		201

		지상		101
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다길 11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1
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다길 7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2	301
		지상	3	401
		지하		101
		지하		102
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라길 14 (신길동)	지하		1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지하		102
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라길 12-1 (신길동)	지상		101
		지하		101
		지상		201
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라길 3-1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상	1	203
		지상	2	301
		지상	3	401
		지하		101
		지하		103
		지하		102
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라길 4 (신길동)	지하		105
		지하		103
		지상	1	201
		지상	2	301
		지하		101
		지하		102
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31-2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	401
		지상	2	301
		지상	1	201
		지상	1	202
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20 (신길동)	지상		402
		지상		401
		지상		301
		지상		206
		지상		205
		지상		204
		지상		601
		지상		202
		지상		201
		지상		101
		지상		B1
		지상		501

		지상		203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다길 17 (신길동)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상	1	203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	301
		지하		103
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25-12 (신길동)	지상		B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지상		B02
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다길 13-8 (신길동)	지상		201
		지하		101
		지상		101
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5길 17-3 (신길동)	지상	1	201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	301
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4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	301
		지상	1	202
		지상	1	201
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6 (신길동)	지상		201
		지상		101
		지하		101
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24-13 (신길동)	지하		103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2	301
		지상	1	201
		지상	1	202
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20-1 (신길동)	지하		101
		지상		401
		지상		301
		지상		101
		지상		201
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20 (신길동)	지상	3	401
		지하		101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상	2	301
		지상	4	501
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24-4 (신길동)	지상	2	304
		지상	2	305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4
		지상	2	303
		지상	1	202
		지상	1	203
		지상	1	204
		지상	2	301
		지상	2	302
		지상	1	201
9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8-1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하		101
		지상		301
		지상		201
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6-6 (신길동)	지하		102
		지상	1	201
		지하		101
		지상	2	301
		지상	1	202
1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6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지상		301
		지상		302
		지상		401
		지상		202
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2-1 (신길동)	지상		101
		지상		301
		지상		202
		지상		201
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 12 (신길동)	지상	1	201
		지하		105
		지상	1	203
		지상	1	204
		지상	1	205
		지상	2	301
		지상	2	302
		지상	2	303
		지상	2	304
		지상	2	305
		지상	3	401
		지상	4	501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4
		지상	1	202
1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 12-1 (신길동)	지상	1	201

		지하		105
		지상	1	203
		지상	1	204
		지상	2	301
		지상	2	302
		지상	2	303
		지상	2	304
		지상	3	401
		지상	4	504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4
		지상	1	202
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 18 (신길동)	지상	2	301
		지상	2	302
		지상	2	303
		지상	2	304
		지상	2	305
		지상	3	401
		지상	3	402
		지상	4	501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4
		지하		105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상	1	203
		지상	1	204
		지상	1	205
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24 (신길동)	지상	2	302
		지상	2	301
		지상	3	401
		지상	1	201
		지상	4	501
		지하		102
		지하		101
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9 (신길동)	지상		301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9-1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7-4 (신길동)	지하		101

		지상		101
		지상		201
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26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하		103
		지하		102
		지상		103
		지상		401
		지상		301
		지상		202
		지상		201
		지하		101
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79길 7 (신길동)	지하		105
		지상	1	201
		지상	1	202
		지상	1	203
		지상	1	204
		지상	1	205
		지상	2	301
		지상	2	302
		지상	2	303
		지상	2	304
		지상	2	305
		지상	3	401
		지상	3	402
		지상	3	403
		지상	3	404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4
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79길 4-15 (신길동)	지상	2	305
		지상	2	306
		지상	3	401
		지상	3	402
		지상	3	403
		지상	3	404
		지상	3	405
		지하		101
		지하		102
		지하		103
		지하		104
		지상	2	304
		지상	2	303
		지상	2	302
		지하		105
		지상	1	205
		지상	1	204
		지상	1	203

		지상	1	202
		지상	1	201
		지상	2	301
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1-9 (신길동)	지하		101
		지상		301
		지상		101
		지상		201
1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9-3 (신길동)	지상		301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1-10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3
		지하		101
		지하		102
		지상		301
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길 6-9 (신길동)	지상		101
		지상		B04
		지상		103
		지상		104
		지상		201
		지상		202
		지상		203
		지상		204
		지상		301
		지상		302
		지상		303
		지상		304
		지상		B01
		지상		B02
		지상		B03
		지상		102
1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길 10 (신길동)	지하		104
		지하		103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3	401
		지상	2	303
		지상	2	302
		지상	2	301
		지상	1	204
		지상	1	203
		지상	1	202
		지상	1	201
		지상	2	304
1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20-1 (신길동)	지상		B01

		지상		201
		지상		101
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17-8 (신길동)	지상		201
		지상		B01
		지상		B02
		지상		202
		지상		301
		지상		101
		지상		102
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17-4 (신길동)	지상		202
		지상		B01
		지상		B02
		지상		102
		지상		201
		지상		101
1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25 (신길동)	지하		101
		지하		102
		지상		201
		지상		101
1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0길 35 (신길동)	지상		101
		지상		301
		지상		302
		지상		202
		지상		401
		지상		201
		지상		102
1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0길 37-4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23 (신길동)	지상		101
		지상		102
		지상		201
		지하		101
		지하		102
1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19-3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상		301
		지하		101
		지하		102
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0길 37-17 (신길동)	지하		101
		지상		101
		지상		201
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19-8 (신길동)	지하		102
		지하		101
		지상		101
		지상		201
1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0길 37-13 (신길동)	지상		101

		지하		101
		지상		301
		지상		201
		지하		102
1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0길 37-11 (신길동)	지상		301
		지하		101
		지상		101
		지상		201
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31-1 (신길동)	지상		101
		지상		201
		지하		101
1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35-3 (신길동)	지상		201
		지하		101
		지상		102
		지상		101
1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18-1 (신길동)	지하		101
		지상		301
		지상		201
		지상		102
		지상		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36호('08.04.17.)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8-46호('08.08.14.), 영등포구고시 제2009-41호('09.08.20.), 영등포구고시 제2011-73호('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2호('17.12.28.), 영등포구고시 제2018-25호('18.03.29.), 영등포구고시 제2019-26호('19.02.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2. 영등포구고시 제2018-44호('18.05.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영등포구고시 제2020-36호('20.02.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일대 「파크원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공공보도 건설공사(SIFC~파크원간 지하보도 연결공사)」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사업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 명 칭: 파크원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공공보도 건설공사 (SIFC~파크원간 지하보도 연결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지하공공보도시설 전체 면적: 10,782㎡(금회 시행면적: 4,248㎡)

○ 금회 시행규모: 면적 4,248㎡, 연장 218m, 폭 16~20m

- 지하보행로:면적 1,946㎡(지하공공보도시설에 포함)
- 지하광장: 면적 120㎡(지하공공보도시설에 포함)
- 지하도상가: 면적 1,158㎡(지하공공보도시설에 포함)
- 지하도출입시설: 면적 284㎡(지하공공보도시설에 포함)
- 부대시설: 면적 740㎡(지하공공보도시설에 포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기 정: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 강 영 길

- 변 경: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 유 필 상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9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기정: 2020년 11월 30일
- 변경: 2020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702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제8조,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폐기 및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인 등록 내역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일
직인	신길제4동장인 민원제4사무전용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신길4동 현장민원실 개소	2020. 10.22.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일
직인	영등포 구청장인 신길제4동 민원제 4사무전용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신길4동 현장민원실 개소	2020. 10.22.